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8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신영대·박희승·김정호

민형배 • 한병도 • 민병덕

임오경 • 한민수 • 전재수

윤준병・조 국・서삼석

정청래 • 정준호 • 문금주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(이하 "계약학과등"이라 함)를 설치할 수 있음.

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계약학과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등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.

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

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「산업교육진흥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~ ③	제1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
	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
	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
	하여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
	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
	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
	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
	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
	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